

의안번호	2210775
의 퇴 인	서미화 의원
회 답 일	2025.6.30.
추계번호	25C315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매년마다 해당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20억원(연평균 4억원)으로 추계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실태조사 등 (안 제31조제2항)	400	400	400	400	400	2,000	40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1조제2항 (실태조사 등)	(제2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함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31조제2항(실태조사 등)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에 따라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가 명시적으로 규정되는 경우 기존 사업의 규모가 확대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유사사례인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사업을 준용
-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는 보건복지부에서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해당 사업을 위한 추가적인 조직 및 인력의 확대는 없는 것으로 가정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개정안에 따라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조사를 매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복지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장애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개정안의 취지는 매년 정기적으로 해당 조사가 실시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것임

- 다만,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는 「장애인복지법」 제57조¹⁾에 따라 국비 지원 시설(2024년 기준 526개소) 중 일부 시설(약 80개소 내외)에 한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2025년 기준 해당 조사 사업의 예산으로 1억원이 편성
- 개정안에 따라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는 경우 기존 사업의 확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사업을 유사사례로 준용하여 추계

□ 해당 실태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기간 동안 총 20억원(연평균 4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2023년 예산 기준 5억원이 집행됨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유사사례 비용(5억원)에서 현행 사업 예산(1억원)을 차감하여 산출
 - 추계기간 동안 단가는 변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표 2]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실태조사 등 (안 제31조제2항)	400	400	400	400	400	2,000	40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 1) 「장애인복지법」 제57조(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을 통하여 기능회복과 사회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 ③ 장애인복지시설시기관은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장애인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 ④ 장애인복지시설시기관은 장애인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려는 장애인에게 시설의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 ⑤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선택에 필요한 정보 제공과 서비스 제공 시에는 장애인의 성별·연령 및 장애의 유형과 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IV. 부대의견

- 본 비용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강시온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강시온	02-6788-4742	sionkang@assembly.go.kr